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이기현·신장식·임미애
박지원·모경중·최민희
홍기원·김교홍·김 윤
정춘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·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, 현행 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·운반·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.

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·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, 활 및 화살의 휴대·운반 방법을 제한하며,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항, 제17조제5항

및 제6항 신설 등).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그 밖에”를 “활의 운반·소지·사용 및 그 밖에”로, “석궁으로”를 “석궁·활로”로 한다.

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이 법에서 “활”이란 활대에 시위를 걸어 사람의 힘으로 시위를 당겼다 놓아 활대의 탄성으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의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석궁에”를 “석궁·활에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석궁의”를 “석궁·활의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“석궁의”를 “석궁·활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활(화살을 포함한다)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활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야 한다.

1. 활집에 넣거나 포장할 것
2. 화살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마개 등으로 감싸서 화살통에 넣거나

포장할 것

⑥ 누구든지 도로·공원·광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활에 화살 등을 장전하거나, 화살이 장전된 활을 조준 또는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운영하는 대회, 행사,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2.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연·체험활동을 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

제73조제1호 중 “제17조제2항·제4항”을 “제17조제2항·제4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제74조제1항제2호 중 “제17조제1항·제3항”을 “제17조제1항·제3항·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략)

③ 군수용으로 제조·판매·수출·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(생략)

제3장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의 소지와 사용

제17조(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의 휴대·운반·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석궁·활에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장 -----
-----석궁·활의-----

제17조(-----
-----석궁·활의-----
-----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활(화살을 포함한다)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활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야 한다.

1. 활집에 넣거나 포장할 것
2. 화살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마개 등으로 감싸서 화살통에 넣거나 포장할 것

⑥ 누구든지 도로·공원·광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활에 화살 등을 장전하거나, 화살

이 장전된 활을 조준 또는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운영하는 대회, 행사,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2.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연·체험활동을 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
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조의2제3항(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1조제1항·제2항, 제17조제2항·제4항,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
- 1의2. ~ 4. (생략)

제7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
제73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제17조제2항·제4항·제6항-----

- 1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74조(과태료) ① -----

<p>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제17조제1항·제3항</u>, 제32조 제4항, 제33조, 제39조제1항·제3항, 제63조,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17조제1항·제3항·제5항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